

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

의안번호	제 1 호	심 의 의 결 사 항
의결일자	2018. 8. 9.	
공개여부	공개	

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
일부개정(안)

제 출 자	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 정 민
제출일자	2018. 8. 9.

1. 의결주문

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원안위 전체회의시 ①합의제기관 설립취지에 맞게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②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해 논의과정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원안위 전체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표결요건·절차 규정 (제10조)

- (현행) 표결을 위한 별도의 요건·절차가 없어, 논의의 성숙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표결처리 가능
- (개정안) 출석위원 2/3 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만 표결처리 가능

나.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(제13조의3)

- (개정안) 회의의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
- ※ 미국(NRC), 일본(NRA) 등은 현재 회의를 실시간 화상중계

다. 기타 : 업무이관에 따른 간사 변경 등

- 원안위 간사 : 안전정책국장 → 기획조정관 (제6조)
- 전문위 간사 : 안전정책과장 → 혁신기획담당관 (제18조)
- 오류수정 : 법(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
→ 원자력안전법 (별표2)

4. 검토사항 : 해당 없음.

5. 참고사항

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고
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음.

【붙임】 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

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 호

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

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안전정책국장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·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표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.

제10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)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안전정책과장”을 “혁신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별표 2 기호(※) 제1호 중 “법 제24조”를 “원자력안전법 제24조”로 하고,
같은 기호(※) 정지의 위원회 보고란 중 “법 제24조”를 “원자력안전법
제24조”로 하며, 같은 기호(※) 재가동의 위원회 보고란 중 “법 제24조”
를 “원자력안전법 제2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의 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위원회 <u>안전정책국장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 안건 의결) ① <u>제7조제2항의 심의·의결안건은 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(보고 안건의 경우 접수한 것으로 본다)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간사는 <u>제2항에 따라</u> 기관의장이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기획조정관</u>-----.</p> <p>제10조(위원회 안건 의결) ① <u>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·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 단서의 경우 표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제3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
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
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
로 보며,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
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
한다.

⑤·⑥ (생략)

<신설>

제18조(전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
(생략)

②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
조정·배부, 회의록 작성 등의 업
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
두되, 간사는 위원회 안전정책
과장으로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-----.

⑤ 제4항--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같음)

제13조의3(정보통신망을 통한 공
개)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
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
공개할 수 있다.

제18조(전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혁신기획단
당관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[별표2]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 관련 심의·의결 및 보고사항 (개정안)

구분		위원회 보고	위원회 심의
1. 원자력안전법 제24조, 제27조,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			
정지	<u>원자력안전법</u> 제24조, 제27조,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한 경우	○	
재가동	<u>원자력안전법</u> 제24조, 제27조,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한 후 재가동하는 경우		○
2. 원자로의 불시정지 또는 사업자의 원자로 수동정지 및 재가동			
정지	기기·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해 원자로가 불시(자동)정지하거나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정지 한 경우	○	
재가동	①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비상 발령 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② 운영기술지침서의 안전한계를 초과한 경우 ③ 운영기술지침서의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한 경우 ④ 다음의 안전설비가 작동해야 함에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. 원자로보호 또는 정지계통 나. 비상노심냉각계통 다. 보조급수계통(단, 중수로의 경우 비상급수계통) 라. 격납용기 격리계통 마. 격납용기 살수계통 바. 비상디젤발전기 계통		○
	①~④외의 경우로서, 원자로의 불시정지 또는 수동정지에 대한 사건조사와 원인분석 및 사업자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	○	

구분		위원회 보고	위원회 심의
3. 계획예방정비 후 원자로 재가동			
재가동	①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비상 발령 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②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주요설비, 기기 등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고장·결함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		○
	①,②외의 경우로서,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합격한 경우	○	

※ 위원회 보고사항은 원자로 정지 또는 재가동 조치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보고

< 안전 담당자 >

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	
임종윤 과 장	(02) 397 - 7381
장 원 사무관	(02) 397 - 7387